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송무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의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직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확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과장급 개방형직위의 선발을 위한 추가면접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공무원의 인사·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소청심사위원회에 공무원의 고충 상담 및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정원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며,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22. 12. 9.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400”을 “402”로 하고, 일반직 계 “399”를 “4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4”를 “376”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인사혁신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인재정보기획관 1개 담당관	5명
2) 기획조정관 1개 담당관	5명
3) 인사혁신국 1개 과	3명
4) 윤리복무국 1개 과	6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한시정원) ①·② (생략) <u><신 설></u>	제30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공무원의 성희롱·성폭 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 혁신처에 둔다.</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00</u>	<u>402</u>	+2
•	•	•	
•	•	•	
일반직 계	<u>399</u>	<u>401</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74</u>	<u>376</u>	+2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20